

서울특별시 시민이웃돕기금 관리규정 증개정 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

1988년5월7일

서울특별시장 김용민

서울특별시 시민복지기탁금 관리규정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시민복지 기탁금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서울특별시 이웃돕기 기금 관리규정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을 시민복지증진에 기여 할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 2조 (기금관리) ① 서울특별시 이웃돕기기금 (이하 "기금"이라한다)은 사회과장 (이하 "주관과장"이라한다)이 관리한다

② 주관과장은 접수한 기금을 이웃돕기기금 수입으로 별도계정하여야 한다

제 3조 (기금관리금고 설치) ①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금고 1개소를 설치 운영 한다

② 제1항에 의한 금고의 명칭은 "서울특별시 이웃돕기 기금"이라한다

③ 기금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

제 4조 (기금접수창구 상설) 사회과에 기금접수창구를 상설운영한다

제 5조 (기금수혜대상) 기금의 수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

- ① 사회복지 시설수용자
- ② 생활보호 대상자
- ③ 정착촌 읍성질환자
- ④ 자활근로대등 불우단체

- ⑤ 불우직업소년
- ⑥ 보훈대상자
- ⑦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유공한자
- ⑧ 사회봉사 단체
- ⑨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
- ⑩ 기타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한다)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우시민

제 6조 (기금의 사용구분) ① 기탁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그 의사에 따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

- ② 기금의 지출은 무상지원에 사용한다

제 7조 (기금의 지출절차) 기금의 지출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

제 8조 (이식의 도모) 기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식을 도모할수 있으며 이식은 기금 수입으로 한다

제 9조 (지도감독및 결과보고) ① 시장은 기금 취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감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케하여야 한다

-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기금관리기관에 대하여 기금관리실적에 대한 사항을 보고케 할수 있다.
- ③ 사회과장은 매년도 기금관리사항을 결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날로부터 시행한다
- ②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당시 계정되어 있는 개나비상조금과 기금은 이규정 시행일로부터 이 기금에 이체한다.